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Abuse on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노수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방법론전공

Su-Hee Roh(ssuiya@catholic.ac.kr)

요약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학대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적 지지망,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별 장애인의 소속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10대, 여성, 1급의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망 변인으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 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학대 피해 비율이 높았다. 생애주기별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에, 통합된 환경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을 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돌봄 제공자인 보호자의 쉼 프로그램 운영, 활동보조인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선, 통합의 질 제고,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지적장애 | 학대 | 피해특성 |

Abstract

The abuses o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reported through mass media are, in most cases, related to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abuse. Nevertheles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buses on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that had remained unrevealed was examin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upport network, the ability to perform daily activities, and the type of belonging of the handicapped in each age group.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has been proposed to operate a rest program for their guardians as main caretakers,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programs for activity assistant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integration.

■ keyword : | Intellectually Disable People | Abuse | Characteristics of Abuse |

I. 서론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진 거주인 학대 사건의 CCTV가 공개된 사건

[1], 짜증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한 사건 [2], 한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지적장애인[3],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후 장기매매를 모의한 사건[4], 섬에 갇혀 신체적 학대, 노동력 착취, 임

접수일자 : 2016년 07월 04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19일

교신저자 : 노수희, e-mail : ssuiya@catholic.ac.kr

금 착취 등을 당하며 근로를 했던 사건[5] 등 장애인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대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학대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6]”을 의미하며, 또래 등 동등한 힘 혹은 지위를 가진 사회적 관계 사이에서의 물리적인 힘으로의 폭력 아닌, 물리적 힘·지식·권력 등에서 우위에 선 자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하는 외부적인 힘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경우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장애인의 39.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지적장애인은 28.58%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비장애인 153만원의 약 3분의 1 수준인 57만원에 불과하여[7] 자본이 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으로서의 권력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지적장애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인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함에 어려움을 가져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우며, 학대 상황에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약취와 유인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21.3%는 가족 내에서 차별·폭력을 경험하여 전체 장애인 7.2%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7]. 또한, 성학대 피해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72.7%로 가장 높으며[8],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 아동 사례 중 68.8%가 지적장애인으로[9]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에 대한 연구는,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10],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학교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11][12]과 같이 피해 지적장애인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과 같이 특정한 학대에 집중하여 이루어짐으로써[13][14] 지적장애인의 전체적인 학대 피해에 대해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학대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일부만 다루고는 있으나, 이는 장애 유형별 학대 피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

라 아동기, 노인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학대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고서가 발간된 당해년도의 학대 피해를 다룬 것에 불과해 장애인의 삶에서 평생 동안의 학대 피해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중 학대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학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지적장애인 중 165,371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전 연령대의 지적장애인의 조사 시점까지의 학대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인구사회학적특성, 사회적지지망, 일상생활수행능력,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기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장애인에 대한 학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학대현황보고서 중 장애유형에 대한 영역이 전부이다. 이는 보고서를 발간한 해의 학대 피해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아동기와 노인기의 특정 생애주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적장애인 전체의 학대 피해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기, 노인기의 장애유형에 따른 폭력 특성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최근 3년간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장애인의 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3년간의 장애아동의 학대 현황을 보면 [15-17], 2014년 기준 학대 피해 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은 3.5%이며, 이 중 40.97%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2012~2014년 모두 신체적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여 장애유형별 학대 피해를 분석한 2011년 아동학대 피해 특성을 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70.7%로 정신적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18].

표 1. 2012 ~ 2014 아동의 장애유형별 학대 현황

단위 : 명, %

	2012	2013	2014
신체적장애	86 (12.18)	101 (12.42)	204 (16.45)
정신적장애	286 (40.51)	342 (42.07)	508 (40.97)
장애의심	334 (47.31)	370 (45.51)	528 (42.58)
계	706 (100.0)	813 (100.0)	1,240 (100.0)

2014년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모두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의 경우만 장애의심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7].

표 2. 2014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명, %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신체적 장애	72 (17.69)	67 (16.54)	5 (7.69)	60 (16.53)
정신적 장애	178 (43.73)	171 (42.22)	34 (52.31)	125 (34.44)
장애 의심	157 (38.57)	167 (41.23)	26 (40.00)	178 (49.04)
계	407 (100.0)	405 (100.0)	65 (100.0)	363 (100.0)

2. 노인기 장애인의 학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3년간의 장애노인의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19-21], 지체장애인 노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인 노인의 학대 피해는 2014년 기준 5.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4년 기준, 65세 장애노인 1,033,308명 중 지체장애를 가진 노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의 0.71%인 7,30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22], 학대피해 노인 중 5.4%가 지체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라 할 수 없다.

표 3. 2012 ~ 2014년 노인의 장애유형별 학대피해 현황

단위 : %

		2012	2013	2014
신체 장애	지체장애	21.8	24.3	28.1
	뇌병변장애	5.1	14.7	10.0
	시각장애	6.1	12.9	13.0

	청각장애	5.3	10.5	14.1
	언어장애	2.1	2.7	2.0
	안면장애	0.5	0.2	0.6
	신장장애	0.3	1.1	0.8
	심장장애	0.5	0.9	1.2
	간장애	0.5	0.2	0.4
	호흡기장애	0.5	1.8	-
	장루요루장애	0.5	0.4	0.8
	간질장애	1.1	1.1	1.0
	소계	44.3	70.8	72.3
정신 장애	지적장애	7.4	5.3	5.4
	자폐성장애	-	0.2	-
	반사회적인격장애	7.2	0.5	0.6
	정신분열	20.5	5.8	6.4
	정동장애	2.9	0.7	1.0
	우울장애	17.6	16.7	14.2
소계	55.6	29.2	27.7	
계	100.0	100.0	100.0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23] 중 지적장애인 사례만을 재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2011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DB에 등록된 장애인명부를 대상으로 전체 지적장애인 165,371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1:1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 조사하였으며, 최종 1,2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거주권역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추정치(모수치)를 산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학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삶에서 신체적·또는 정신적 학대의 정도를 “매일, 주1~4회, 월1~3회, 2달에 한 번 이상, 1년에 1~3회, 경험한 적 없음”의 6단계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이를 SPSS 21.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분석으로 집단별 학대 피해 분포 및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지적장애인 학대 피해의 실태

조사결과, 지적장애인의 20.9%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1.2%는 매일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4.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험

	빈도	퍼센트
① 매일	1,989	1.2
② 주 1~4회	3,227	2.0
③ 월 1~3회	5,623	3.4
④ 2달에 한 번 이상	4,662	2.8
⑤ 1년에 1~3회	19,061	11.5
⑥ 폭력을 당한 적 없다	130,809	79.1
계	165,371	10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 피해

2.1 연령구간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연령구간별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9세로 나타났으며,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60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구간별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10세 미만	1.7	2.1	1.2	3.9	5.5	85.6	100.0
10~19세	2.3	3.4	3.5	3.9	16.4	70.5	100.0
20~29세	0.4	3.1	3.4	1.2	10.9	80.9	100.0
30~39세	0.4	1.7	4.1	4.0	11.9	77.8	100.0
40~49세	1.9	0.0	2.4	2.8	9.1	83.7	100.0
50~59세	1.5	1.4	3.5	2.7	13.4	77.6	100.0
60세 이상	0.0	0.0	5.4	0.0	1.8	92.8	100.0
F	562,538***						

*** p<.000

10대를 다시 초등학교 시기인 8~13세, 중·고등학교 시기인 14~19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생의 30.5%, 중·고등학교생의 35.3%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생의 학대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6. 세부 연령구간별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8세 미만	0.0	0.5	1.5	0.0	0.7	97.2	100.0
8~13세	4.7	3.7	4.9	4.7	12.5	69.5	100.0
14~19세	1.4	4.2	4.9	4.8	19.9	64.7	100.0
20~29세	0.7	3.3	3.4	1.6	11.7	79.4	100.0
30~39세	0.4	1.8	4.1	4.5	11.8	77.4	100.0
40~49세	1.9	0.0	2.4	2.8	9.1	83.7	100.0
50~59세	1.5	1.4	3.5	2.7	13.4	77.6	100.0
60세 이상	0.0	0.0	5.4	0.0	1.8	92.8	100.0
F	685,390***						

*** p<.000

2.2 성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지적장애인의 성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20.5%, 남성장애인의 20.6%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보다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0.4%p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보다 ‘1년에 1~3번’ 학대를 당한 비율이 2.3%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전체적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비율은 더 높으나, 일상적인 학대는 남성장애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표 7. 성별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남	1.5	1.8	4.2	2.9	10.1	79.5	100.0
여	1.1	2.0	3.3	2.8	12.4	78.4	100.0
F	48,338***						

*** p<.000

2.3 장애등급과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지적장애인의 장애등급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급 지적장애인의 22.8%, 2급 지적장애인의 22.0%, 3급 지적장애인의 22.7%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장애인의 경우 전체적인 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으나, 2, 3급 장애인의 경우 1급 장애인보다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경증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일상적 학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장애등급과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1급	1.1	3.1	3.5	4.3	10.8	77.2	100.0
2급	1.5	1.7	4.1	2.6	12.0	78.0	100.0
3급	1.5	2.0	3.7	2.7	12.8	77.3	100.0
F	20.278***						

*** p<.000

3.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학대 피해

사회적지지망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자아 효능감을 증가시키며, 역량강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 [24].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대인관계로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거주지에서 타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주형태, 대인관계 연결망으로의 친한 친구의 수를 활용하였다.

3.1 거주 형태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지적장애인의 가족지지를 분석하기 위해 거주형태에 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거주 장애인의 16.2%, 가족과 동거하는 장애인의 23.9%, 병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8.7%,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9.2%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및 거주시설의 경우, ‘매일’ 학대가 이루어지는 일상적 학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헐적 학대 피해가 나타났으며, 가족과 동거하는 장애인의 1.6%가 ‘매일’ 일상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거주형태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단독거주	0.8	0.9	1.9	3.1	9.4	83.8	100.0
가족동거	1.6	2.5	4.1	3.2	12.5	76.1	100.0
병원	0.0	0.0	0.0	8.9	9.9	81.3	100.0
거주시설	0.0	3.1	5.1	2.4	8.6	80.8	100.0
F	175.568***						

*** p<.000

3.2 친한 친구의 수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사회적지지망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친한 친구의 수를 ‘없음, 1~5명, 6~10명, 10명 이상’의 4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한 친구가 없는 지적장애인의 21.3%, 1~5명인 지적장애인의 24.7%, 6~10명인 지적장애인의 23.7%, 10명 이상인 지적장애인의 18.6%가 학대 피해를 경험하여 친구의 수가 많은 집단의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적게 나타났다.

표 10. 친한 친구의 수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없음	1.2	1.7	3.6	3.0	11.8	78.7	100.0
1~5명	1.8	2.9	4.1	3.7	12.2	75.3	100.0
6~10명	2.0	4.1	4.0	1.7	12.0	76.3	100.0
11명 이상	0.0	0.0	6.2	0.0	12.4	81.4	100.0
F	184.078***						

*** p<.000

4.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와 학대 피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도움을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25].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독립수행, 대부분 독립수행, 일부 도움필요, 대부분 도움필요, 거의 도움필요’로 조사하여 이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에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15.6%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반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27.0%가 학대 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증가할수록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가족 등의 돌봄제공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표 11.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독립수행	1.3	1.8	2.0	0.1	9.4	85.4	100.0
대부분 독립수행	1.8	2.5	2.4	1.2	11.8	80.3	100.0
일부 도움필요	1.4	1.8	3.9	3.1	14.5	75.4	100.0
대부분 도움필요	0.1	2.7	4.7	5.1	10.1	77.4	100.0
거의 도움필요	2.6	2.3	5.6	5.5	10.9	73.0	100.0
F	296.084***						

*** p<.000

5. 연령별 지적장애인의 이용기관과 학대 피해

한 개인의 삶은 생애주기에 따라 그 영역을 달리한다.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육기관을 거쳐 지역사회로 그 영역을 확대해간다. 이렇듯 생애주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속한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생애주기별 이용기관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5.1 영·유아기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영·유아기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학대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대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연 1~3회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1.0%로 나타났다.

표 12. 영·유아기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이용	0.0	0.0	0.0	0.0	0.0	100.0	100.0
미이용	0.0	0.0	0.0	0.0	11.0	89.0	100.0
F	329.514***						

*** p<.000

5.2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학교유형과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학교유형 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대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학교 일반학급(32.7%), 일반학교 특수학급(32.6%), 특수학교(3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적 학대의 비율이 일반학교 일반학급보다 약 1.7배, 특수학교보다 약 3.9배 높게 나타났다.

표 13. 학령기 학교유형과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특수학교	1.2	3.9	4.8	7.6	13.7	68.8	100.0
일반학교 특수학급	4.7	4.2	5.6	2.1	16.1	67.4	100.0
일반학교 일반학급	2.8	2.3	2.5	3.8	21.4	67.3	100.0
대안학교	0.0	40.4	0.0	0.0	0.0	59.6	100.0
다나지 않음	0.0	0.0	0.0	0.0	0.0	100.0	100.0
F	80.761***						

*** p<.000

5.3 성인기 취업여부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취업여부와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취업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4.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취업여부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취업	0.7	3.3	5.0	2.6	10.6	77.8	10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100.0	100.0
미취업	1.0	1.7	3.3	3.2	11.2	79.6	100.0
F	159.623***						

*** p<.000

취업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용 내의 지적장애인은 19.7%, 보호고용 내의 장애인은 22.4%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501, p=.002).

표 15.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고용형태와 학대 피해 현황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일반고용	1.4	3.6	4.4	2.7	7.6	80.3	100.0
보호고용	0.0	2.8	5.1	2.4	12.1	77.6	100.0
F	9.501**						

** p<.005

IV. 소결

본 연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특정 장애유기별로, 특정 기관에 접수된 1년의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과 대비하여 전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인구사회학적, 사회적지지방,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지역사회 기관 이용 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수행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적었다.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경험의 분석에서는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았으며,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1급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족과 동거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은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적었다.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정도와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지적장애인의 소속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령기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기 장애인의 경우, 취업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많게 나타났으며, 고용 형태로는 보호고용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의 원인 탐색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취약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는 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으며, 영·유아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81.1%는 ‘장애로 인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로 응답하여 보다 중증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들과 동거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다른 거주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적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들의 돌봄 스트레스가 학대의 형태로 지적장애인에게 표출됨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둘째, 통합 환경 내 비장애인 또래들로부터의 학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연령 구간 별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학교 유형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한 결과 분리된 형태인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대한학교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의미로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동일한 공간 내에서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심리적 통합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 주 돌봄제공자로서의 보호자를 위한 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가족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족휴식으로[26]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독립된 ‘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 학대 가해자의 70%가 가족이며, 이를 장기간의 양육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27], 우리나라

라 역시 지적장애인의 돌봄은 지역사회가 아닌 가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돌봄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발생이 일반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보호자가 돌봄 스트레스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스트레스가 학대의 형태로 표출됨을 예방할 수 있는 ‘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자 외 지적장애인의 주 돌봄제공자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교육은 신규 4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전문교육은 20시간에 불과하다[28].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의 주 내용에 장애인의 학대 피해 예방 및 권익 옹호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9]. 국민연금공단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으로 근로계약, 복리후생, 업무환경,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것일 뿐[30] 이용자인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활동보조인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추가적이며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적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내용으로의 교육·평가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의 재 고찰이 필요하다. 2000년 초·중·고를 합쳐 3,759개이던 특수학급은 2015년 9,153개로 증가하였으며,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또한 2000년 20,616명에서 2015년 21,808명으로 증가하였다[31]. 하지만 지적장애학생이 급우들에게 담배빵을 당하는 사건[32],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32] 등 통합 환경 내 비장애 학생에 의한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권교육,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32]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연 2회 장애인해 교육 등 단기간 특강 형태의 교육으로 학급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

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의 증가를 장애인의 통합으로 보며 물리적 통합만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통합을 고려한 장기적 교육 계획 수립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나 일반교사의 8.6%는 여전히 장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16.9%는 통합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35]. 그러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통합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학교 관리자 및 일반 교사를 위한 지속적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적장애인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실태조사 및 노인학대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장애유형 별 학대 현황이 전부로 이는 아동기와 노인에 국한된 자료이자 해당 사업기관의 1년 사업 통계 자료로써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학대 피해 현황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학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정 내에서의 차별·폭력경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여부,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여부’로 거주시설 등 가정 외 공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이 아닌 심리적·신체적 학대 등의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에 따른 학대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News1, “남원평화의집 CCTV에 사회복지사 장애인 폭행 찍혀,” 2016.5.18.
- [2] 노컷뉴스, ““짜증나게 한다”... 지적장애 여성 폭행한 ‘철없는 20대,’” 2016.6.8.
- [3]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상습 폭력 복지관 퇴출 시키야,” 2016.4.6.

- [4] 스포츠동아, “악마가 된 여고생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담뱃볼로 지지고 끊는 물 부어,” 2015.8.20.
- [5] 이테일리, “경찰청, 엽전·양식장 등 일제수색... ‘엽전 노예’ 370명 발견,” 2014.3.3.
- [6]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7]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8]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2016.
- [9] 최복천, 김유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장애아동 학대 고찰,” 법과 인권교육 연구, 제9권, 제1호, pp.99-12, 2016.
- [10] 최복천,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4호, pp.151-174, 2014.
- [11]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제9권, 제3호, pp.71-89, 2010.
- [12] 조영숙, 이현수,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pp.215-228, 2011.
- [13] 이현수, “장애아동과 학대의 원인과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제2호, pp.54-65, 2011.
- [14] 김성희,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43권, pp.44-50, 2008.
- [15]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3.
- [1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4.
- [17]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5.
- [18]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2.
- [19]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3.
- [20]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4.
- [21]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5.
- [22]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1호, 2015.
- [23] 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염태산, 조상은, 오옥찬, 김준영, 조상욱,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활동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24] 황령희,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와고용, 제13권, 제2호, pp.21-43, 2003.
- [25] 권중돈,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pp.1-19, 2004.
- [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2015.
- [27] Kyodo News, “日,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전체 70%, 가족이 가해자,” 2014.11.26.
- [28] <http://www.ableservice.or.kr/>
- [29] 나영희, 이복실, 윤재영, 김동기, 이윤희,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 [30]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활동지원부,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매뉴얼, 2015.
- [3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2015.
- [32] 함께걸음, “일명 ‘담배깡’ 당한 지적장애인... 장애인 학교폭력 대책은?,” 2014.11.7.
- [33] 쿠키뉴스, “[단독]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학교성폭력 사건, 남아있는 무수한 메아리들,” 2016.5.27.
- [34] 이정현,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국립특수교육원, pp.7-18, 2014.
- [35] 윤점룡, 원종례, 권효숙, 유장순, 김주영,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저 자 소 개

노 수 희(Su-Hee Roh)

정회원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사)
- 201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방법론전공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장애, 폭력,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지원